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101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훈

피고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21. 11. 25.

판결 선고2022. 1. 2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1. 11.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9. 1. 14. 접수 제782호 2019. 1.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들과 C 사이의 주택공급계약 체결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수시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던 C와 각 주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또는 중도금 일부를 납입하였다.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은 2016. 8.경이다.

1	원고	2015. 7. 20.	E호
2	F	2015. 7. 22.	G호
3	H	2015. 7. 13.	I호
4	J	2015. 7. 13.	K호
5	L	2015. 7. 9.	M호
6	N	2015. 7. 6.	O호
7	P	2015. 7. 16.	Q호
8	R	2015. 7. 14.	S호
9	T		
10	U	2015. 7. 8.	V호

나. C과 피고 사이의 계약

- 1) 피고는 2018. 8.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권을 양수하였다.
- 2) 피고는 2019. 1. 11. C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9. 1. 14.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C에 대해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C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2019. 1. 11.자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C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임성철

판사김준석

판사이유경

별지